

2025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[장애인 제한경쟁] 채용 공고

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의 KOEM 해양환경공단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,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청년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. 8. 1.
해양환경공단 이사장

채용 안내사항

1. 본 채용은 공공부분 청년일자리 창출 강화 및 청년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~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한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입니다.
2. 공단은 공정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,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사진, 신체조건 등)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※ 단, 입사지원서 상 기본 신상정보란에 기재하는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성별,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응시자 구분 및 전형별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전형별 평가 시 비공개 처리됨
3. 입사지원서(학력사항, 자격·면허사항, 경력·경험사항, 자기소개서 등) 작성 시, 개인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군대 병사 경험 등)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,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작성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증빙서류 제출 누락 등 채용과정에 있어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,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5. 본 「공고문」 및 「직무설명자료」, 「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필히 확인하시어 입사지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채용 부문

직군	직무분야	근무지	인원	응시자격
체험형 청년인턴 (장애인 제한)	사무행정 보조	공단 본사 (서울)	3명	· 학력 및 전공 무관 ※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
		해양환경교육원 (부산)	2명	
공통 자격사항	※ 응시자격 기준 시점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시간) 이내			
	◎ 성별/병역: 무관 ◎ 연령: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~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* (복무기간 기준) 1년 미만: 1세 / 1년 이상~2년 미만: 2세 / 2년 이상: 3세 ◎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◎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(배임 및 횡령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. 미성년대상 성범죄자(영구 결격) 10.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“해임”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“파면”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			

근무조건

신분	직급	월 보수	근무기간	근로조건
기간제 근로자	청년인턴 (체험형)	2,096,270원 (세전)	2025. 9. 11. ~ 2025. 12. 19.	· 주 40시간 근무(8시간/일) · 법령에 따른 연차(월 1회) 부여 · 4대 보험 가입 · 숙소제공 없음

가점 사항

▶ 전형별 해당 항목별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
- 가점사항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각 전형별 만점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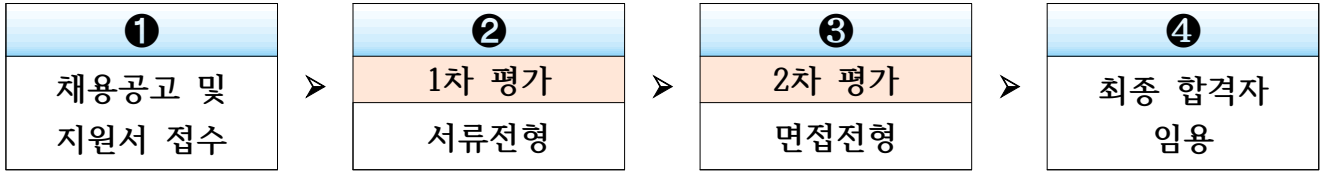
구분	적용 대상		적용비율	적용 단계	
				1차 (서류)	2차 (면접)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		만점의 5% / 10% 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름)	●	●
	비고	※ 가점합격을 상한제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)에 따라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)			
장애인	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한 장애인		(1항) 만점의 5% (2항) 만점의 10%	●	●
저소득층	「공무원임용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(국민 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족지원법)		만점의 5%	●	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		만점의 5%	●	
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		만점의 5%	●	
해양환경공단 우수인턴	- 공단 「인사규정시행세칙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단 청년인턴 우수활동자 ※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한 청년인턴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자만 해당이 되며,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을 수료한 날이 2년을 넘지 않은 자에 한함		만점의 2%	●	

※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시간) 기준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

※ 장애인,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 가점은 「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합격을 상한제」를 준용함

※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가점하지 않으며, 가점한 점수가 해당 전형의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

라 채용절차



①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

- ▶ 공고 및 접수기간: 2025. 8. 1.(금) ~ 8. 18.(월), 12:00(정오)
 - 정해진 기간(시간) 내에 입사지원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, 불합격 처리
 - 접수방법: 온라인 입사지원(<https://koem.fairyhr.com>)

② 서류전형: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

- ▶ 적격심사 :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(블라인드 채용 방식)

※ 아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

- ① 해당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
- ②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방식 위배 여부
 - ※ 성명, 나이, 성별, 종교, 출신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군대(병사) 경험 등 개인 인적정보 기재 불가
- ③ 입사지원서 상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불성실(작성 글자 수 부족, 동일 내용 반복 작성, 해당항목 미 작성, 작성내용 표절, 비속어 기재, 공단 명칭 오기재 등) 여부

- ▶ 정성평가: 적격자 대상으로 실시
 - 평가방식: 자기소개서를 통한 역량 평가(100점 만점)
- ▶ 합격자 결정: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
(만점의 6할 이상인 자)으로 면접대상자 결정(동점자 복수합격)
- ▶ 합격자 배수 설정: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

③ 면접전형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
- ▶ 면접대상자: 서류전형 합격자
- ▶ 합격자 선정: 면접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
 - 평가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(100점 만점)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
 -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 규정시행세칙 제18조(동점자의 합격결정)에 따라 합격자 결정
- ▶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(면접전형 당일 면접시험 종료 이후 현장 제출)

- ④ 최종 합격자 임용: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및 지정된 일자에 공단 임용
- ▶ 예비합격자 선정: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

☐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
면접당일 (사본제출)	구분		제출자료
	필수 응시자격		• 장애인 증명서(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포함)
	해당자에 한하여 제출	가점	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해양환경공단 우수 청년인턴 표창(상장)
		학력	• (졸업자)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• (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 / (재학자) 재학증명서
		자격 면허	• 자격·면허증 발급 확인서, 자격·면허증 취득확인서 등 공식자료
		경력	• 경력증명서(해당기관 직인 포함) •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		경험	• 경험사항 관련 증빙(수료증, 이수증, 확인서 등)
임용당일 (원본제출)	▶ 면접전형 시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(원본) ▶ 기본증명서 1부 / 주민등록등본 1부 / 반명함판 사진 1매 / 통장사본 1부		
《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》			
※ <u>입사지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필수 응시자격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불가</u>			
※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해당 서류에 기재된 발급기한 및 인정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제출			
※ 입사지원서 내 경력 및 경험기간 작성 시, 해당 경력(경험)증명서 상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게 작성			
※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			
※ 증빙서류에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			
※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현장 제출(별도 안내 예정)			
※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			

☐ 전형일정(안)

내 용	일 정(2025년)
▶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(15일)	8. 1.(금) ~ 8. 18.(월) 12:00(정오)
▶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8. 22(금)
▶ 면접전형 실시	8. 27.(수) ~ 8. 29.(금)
▶ 최종합격자 발표	9. 5.(금)
▶ 최종합격자 임용	9. 11.(목)

※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(SMS 발송 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공단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사항 발생 시, 별도 공고 예정)

☐ 제출서류 반환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

- ▶ 청구 대상: 본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
- ▶ 청구 기간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
- ▶ 청구 방법: 반환청구서 양식(별지 서식1) 작성 후, 공단 전자우편 또는 팩스, 등기우편으로 제출

※ 전자우편: recruit@koem.or.kr / 팩스(☎ 02-3462-7707)

※ 등기우편: (주소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,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

- ▶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- ▶ 온라인 상 작성·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.
- ▶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, 공단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▶ 청구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
[별지 서식 1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별지 서식 2]

채용결과 이의신청서

신청인 정보	응시 분야			
	성 명		수험번호	
	연락처		전자우편 (e-mail)	
이의신청 내용	관련 내용 상세하게 기재			

년 월 일

성 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

- 이의신청 사유 및 해당 채용전형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심사위원 성명, 타 응시자 전형결과 등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전자우편으로 해드립니다.
-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 확인 등 내·외부 경영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.